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24. 12. . 의 안 7082 번 호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1283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24.7.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 차 전체회의(2024.9.23.) 상 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2867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024.8.1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 차 전체회의(2024.12.6.) 상 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5689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024.11.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 직접 회부(2024.12.18.)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5758호)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4.11.2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 직접 회부(2024.12.18.)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 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 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 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 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및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 나.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 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 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 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